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Brain Pool) 주요 FAQ

[사업 목적]

Q BP사업에서 과제란 무엇인가요?

A 본 사업은 과제책임자가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해외고급과학자 1인을 지원받아 연구 성과 향상 및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목적으로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단, 연구책임자가 기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있어야만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강의를 위한 해외과학자 초빙도 가능한가요?

A 본 사업은 R&D사업으로 강의만 전담하는 경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1과목 이내의 강의 또는 교육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강의는 가능합니다.

[신청 관련]

Q 사업신청을 해외고급과학자 또는 연구책임자가 아닌 참여연구원도 할 수 있나요?

A 사업신청 및 관련 보고서(입국, 활용변경, 결과보고 등) 등의 제출은 연구책임자가 하여야 합니다.

Q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작성 시 외국에 거주중인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A 신청서 제출시는 공란으로 하시되 향후 선정 및 국내 입국시 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사후 기입하기 바랍니다.

Q 박사학위 등 및 증빙 서류가 현지어(독일어, 프랑스어 등)로 되어 있는 경우는 그대로 제출하여도 되나요?

A 증명서 및 추천서는 한국어와 영어만 인정이 되며, 부득이하게 현지 언어로 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문서들을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 및 번역내용에 대해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기간]

Q 주관연구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인 경우, 유형 1로 3개월에서 12개월의 단기만 지원 가능한지요? 또한 유형 2에 지원할 수 있나요?

A '유형 2'로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유치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여 주관기관과 초빙과학자가 협의하여 알맞은 유형에 지원하면 됩니다.

Q 유형 2의 경우, 1차년도 사업기간은 연구개시일 기준으로 1년인지요? 그리고 남은 예산은 차년도로 이월이 가능한가요?

A 브레인풀 과제의 1차년도는 과제 시작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이며, 2차년도부터는 12개월(1월 1일~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남은 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지원자격]

Q 초빙하려는 과학자가 박사학위가 없으면 지원이 안되나요?

A 대학, 출연연 등 연구소에서 초빙하는 경우 자격미달로 지원이 불가능 하며,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초빙하는 경우 박사학위가 없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단, 해외현지의 산업체에서 5년 이상의 연구 및 기술개발 경험 보유자에 한함)

Q 해외 R&D 경력의 경우, 박사학위를 받기 전의 경력도 포함인가요?

A 박사학위를 수여받기 전의 경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유치하는 경우에는 초빙과학자가 해외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의 R&D 경력의 보유자인 경우, 박사학위 여부와 상관없이 유치신청이 가능합니다.

Q 박사학위가 있어도 지원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A 박사학위 취득 후 해외 경력이 5년 이하이거나, Post-Doc인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Q 초빙과학자가 현재 국내 연구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소속된 경우 지원가능한가요?

A 현재 국내연구기관에 정규직으로 소속된 분들은 본 사업의 취지인 해외고급과학자를 초빙하는 것과 맞지 않으므로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내 연구기관에서 계약직, 파견 및 임시직으로 근무 중이신 분들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Q 해외에서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도 지원할 수 있나요?

A 본 사업은 국내에서 공동연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해외현지의 공동연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초빙과학자가 해외출장이 잦은 경우(활용기간의 10%초과)에는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수도 있습니다.(초과기간만큼 연구지원비 환수)

Q KRF 우수 종료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KRF 과제 종료시 평가를 통해 우수 종료자를 선정하는 건가요?

A KRF 사업을 정상 종료 및 조기종료(해외취업에 한함) 한 KRF 유치연구자 중, 과제 종료후 최종 평가를 통해 'S' 또는 'A' 등급을 받은 경우, 브레인풀 초빙과학자의 신청 자격을 부여합니다.

Q KRF 우수 종료자가 브레인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KRF 사업과 같은 연구책임자로 지원해야 하는지요?

A 브레인풀 초빙과학자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므로, 연구책임자는 KRF 사업과 다른 경우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Q KRF 우수 종료자가 한국 국적인 경우, 한국에 체류 중이면 지원할 수 없나요?

A 지원 가능합니다.

Q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 연계한 신규 선정 우대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요?

A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을 통해 국내에 공동 설립한 연구센터 등에서 해당 해외우수연구기관의 재직 연구자(정규직) 초빙을 위해 유형 1 신규 신청시 선정 우대합니다.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참조
https://www.nrf.re.kr/biz/info/info/view?biz_no=152

Q 연구책임자가 한국 연구기관에 소속된 외국인일 경우 BP사업에 지원 가능한가요? 이 경우 사업신청서를 영문으로 작성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A 국내 연구기관에 소속 정규직으로 조교수, 선임연구원 또는 연구소장(기업부설연구소) 이상이시면 BP사업 연구책임자로서 지원 가능하십니다. 사업신청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나 연구내용 등 초빙과학자와 소통이 필요한 부분은 영문으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Q 국내에 체류 중인 해외과학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및 교포과학자(외국국적)의 경우 지원이 가능하고, 한국국적 과학자의 경우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해외 체류 중인 경우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유치하고자하는 초빙과학자가 2016년에 브레인풀에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 2019년 신청 시, '신규 신청'인가요? '재신청'인가요?

A 안내서에 명시된 3년 이내 재신청 기준은, 연구재단으로 사업이 이관된 후(2017년 지원과제부터) 선정된 과제에만 해당되며, 그 이전에 선정된 과제들은 신규('유형 1', '유형 2')로 신청 가능합니다.

Q 브레인풀 사업은 3책 5공 대상인지요?

A 본 사업의 연구책임자는 3책 5공 대상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Q 인건비에는 기관부담금이 포함되나요?

A 본 사업에서의 인건비는 주관 기관에서 초빙 과학자를 고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인건비를 말하며, 초빙과학자의 연봉 + **기관부담금(4대 보험, 퇴직금 및 기타 법정부담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초빙과학자와 연봉계약 시 브레인풀의 인건비는 기관부담금이 포함된 부분임을 숙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직접비가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A 본 사업은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는 없는 사업입니다. 연구책임자의 다른 과제의 직접비를 일정부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항공료 지원이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A 선정통보 후 연구 착수를 위해 입국하는 모든 초빙과학자 본인의 최단 직항로 왕복항공료가 1회 지원 됩니다.

※ 12개월 이상 지원 과제의 경우 동반가족 1인의 최단 직항로의 왕복항공료도 추가로 지원됩니다.

Q 인건비 산정 기준은 유치하려는 연구자의 현 근무지 연봉기준으로 세전금액(Gross Income)인가요, 세후금액(Net Income)인지요?

A 세전 금액(Gross Income)을 기준으로 합니다.

Q 주관기관에서 상해질병 보험료 등을 이미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기관에서 보험료 등 지원하고 있는 경우, 상해질병 보험료를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시고 연구 재단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Q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의 경우 선정 인건비의 70%만 지원되나요?

A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의 경우 최종 지원 인건비 규모의 70%만 지원하며 나머지 30%의 금액은 의무적으로 매칭 지원하셔야 합니다.

※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주관연구기관의 경우 연구비(인건비, 유치경비)의 매칭지원이 필수는 아닙니다.

Q 보험료 중에서 자동차 보험료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A 기타 경비의 보험료는 명시된 것처럼 상해질병보험료(실손형보험)에만 해당되며 자동차보험 관련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액형 보험(생명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등)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상해질병보험은 환급금이 발생하는 플랜으로 가입해도 되나요?

A 해약 시 해외고급과학자에게 환급금이 지급되면 안 되므로, 순수 보장형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Q 이사비에 국내 이사비도 포함되나요?

A 이사비(이주비)는 브레인풀 사업 선정후, 초빙과학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으로 입국시 발생하는 이사 비용을 의미하며, 국내에서의 이사비, 입주 청소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 국내 입국시 개인 일정 등으로 타국을 경유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동일 대륙 권역 내에서 최대한 인정하되, 차액 발생부분은 본인 부담으로 처리합니다.

Q 자녀 교육비에 대학교 학비는 지원이 되나요?

A 초빙과학자의 직계자녀의 누리과정 및, 초등, 중등, 고등 과정의 교육비만 지원이 됩니다.

Q 자녀 교육비에 영어유치원을 다니는 경우에 지원이 되나요? 혹은 외국인 학교의 유치원 과정을 다니는 경우에 지원이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영어유치원은 국내법상 학원이며 누리과정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영어유치원은 교육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Q 해외 학회에 참가할 경우 출장비와 학회 참가비가 지원이 되나요?

A 국내 출장비 및 국내학회참가비만 지원이 가능하며, 해외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간접비가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A 본 사업은 주관기관에 지원하는 간접비가 없는 사업입니다.

Q 사업비 정산시 반납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연구지원비는 활용이 중단된 경우 중단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유급휴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도 초과일수 만큼의 연구지원비를 산정하면 됩니다.
유치경비는 지원기준에 의거 정산하면 됩니다.

Q 잔액반납은 어떻게 하나요?

A 사업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고,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담당자와 협의한 다음 지정계좌로 반납하면 됩니다.

Q 사업비 지원이 안되는 경우가 있나요?

A 모든 항목은 증빙 영수증이 없을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사비의 증빙은 이사업체 영수증이 원칙이지만, 해외고급과학자에게 이주비 지급한도 내에서 지급하되, 객관적이고 입증 가능한 내역의 제시하여야 합니다.

[해외고급과학자 관리 등]

Q 연구책임자가 수행하는 타사업(R&D과제)에 초빙과학자가 참여하는 방법이 있나요?

A 해외고급과학자의 인건비는 BP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고, 타사업에 30% 이내로 참여하여 직접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해외출장 등 수당지급 가능) 또한 유치시 해외고급과학자의 역량이 우수하여 인건비를 추가로 책정하기 원할 경우 기관 매칭을 통해 인건비 추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Q 출장과 휴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 해외출장은 BP사업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 사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출국 등은 유급휴가로 사용해야 합니다.(학생지도, 논문심사, 개인적인 회의 또는 행사 참석 등은 사적 업무에 해당)

휴가는 국내 또는 해외에서 개인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로 활용기간에 따라 정해진 유급휴가 일수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면 됩니다.

Q 해외출장에 제약사항은 없나요?

A 해외출장 누적일수가 지원기간의 10% 초과 또는 1회에 10일 초과할 경우 출장계획서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 후 주관연구기관은 승인내역 및 출장계획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외 출장 종료 후 출장보고서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 제출(출장 종료 후 7일이내)

※ 해외출장에 대해 공무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유급휴가에서 차감하고, 유급휴가 일수를 초과할 경우 초과일수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회수

Q 해외출장 시 입·출국일도 출장일수에 포함되나요?

A 입국일과 출국일 2일을 1일(각 0.5일)로 계산하여 포함하면 됩니다.

예) 월요일 출국-금요일 입국의 경우 1일, 월요일 출국-토요일 입국의 경우 1일(반올림), 토요일 출국-일요일 입국의 경우 0일로 계산

Q 연구 수행을 위해 해외에서 10일 이상 체류가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사전보고 및 승인 등을 통해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과제계획서 등에 동 사항에 대한 반영이 필요합니다. (※과제계획서에 해외 연구일정 등이 없는 경우는 연구재단 사전 승인 필요)

Q 건강상 등의 이유로 1개월 이상 병가 등은 신청 가능한지요?

A 사전보고 및 승인 등을 통해 추진해야 합니다. 1개월 이상 병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진단서) 등을 BP 사업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전문기관에서 최종 심의 후에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기타]

Q 선정 후 3개월 이내 입국 및 연구개시라고 안내되어 있는데, 해외에서 연구 개시를 먼저 하고 추후에 입국은 가능한가요?

A 과제 목적이 해외에 있는 외국인 과학자를 초빙하여 국내 연구개발 현장에 공동 참여하는 것이므로 우선 한국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연구를 시작하여야 합니다.(입국 후 연구개시)

Q 초빙과학자의 숙소는 주관연구기관에서 제공해야 하나요?

A 초빙과학자의 숙소는 주관연구기관이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초빙과학자가 일부 분담해야하는 경우는 초빙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합니다.